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31일, 서범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0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직접 회부(25.11.14.)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범수 의원)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에 직접 회부(25.11.14.)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u>소방관서장은</u>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u>사항을</u>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 ----- ----- ----- ----- ----- <u>행정적 · 재정적</u> <u>지원을 할 수 있다.</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